##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90 발의연월일: 2022. 11. 17.

발 의 자:이헌승·서병수·황보승희

박덕흠 • 김승수 • 박성민

전봉민 · 이양수 · 이주환

안병길 · 이채익 · 유의동

하영제 의원(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폐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운 행하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그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으로써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이륜자동차의 제작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폐차제도가 부재하여,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도심 미관 훼손 및 노후이륜차의 범죄 악용 등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해 폐차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안 제84조제3항 및 제4항).
-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 폐차 요청된 이륜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사용폐지신고의 대행을 포함(안 제2조제9호).
- 다. 이륜자동차를 제작하는 자 등은 제작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게 하고,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절차 등 규정(안 제48조 의2 및 제49조의3).
- 라. 이륜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제재 등 규정(안 제52조, 제66조, 제80조, 제82조 및 제84조).

#### 법률 제 호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자동차"로, "말소등록신청"을 "말소등록신청 또는 사용폐지신고"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를 "사용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을 "사항이 변경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으면 이륜자 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이륜자동차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이륜자동차 제작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 중 "사용 신고"를 각각 "사용신고"로 한다.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등) ①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 48조에 따라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폐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2. 이륜자동차를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반품한 경우
- 3.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이륜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4. 이륜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5. 이륜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 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폐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사용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자(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

- ④ 사용폐지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사용폐지신고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수 있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륜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49조의3(신고사항의 직권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1.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2. 이륜자동차의 차대가 이륜자동차대장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3.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26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4.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이륜자동차대장에 적힌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륜자동차 신고사항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와 제4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이륜자동차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이륜자동차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1. 본인이 소유하는 이륜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이륜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제52조 전단 중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포함한다)"로, "제34조"를 "제34조,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을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신규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신규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으로한다.

제58조제5항제1호 중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자동차·자동차등록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4호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등록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말한다. 이하 마목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제58조제5항제2호을"을 "제58조제5항제2호를"로,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으로 한다.

나.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3조제1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5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0조제8호 중 "제58조제5항제1호을"을 "제58조제5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58조제5항제2호을"을 "제58조제5항제2호를"로,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말한다)·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2조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4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륜자동차번호 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제84조제3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 7.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 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84조제4항제18호 및 제18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8호의4부터 제18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6호의2 중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을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3항,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18의4.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의5. 제4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의6.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폐지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폐지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9
폐차 요청된 <u>자동차(이륜자동</u>	<u>자동차</u>
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u>말소등록신청</u> 의	말소등록신청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	또는 사용폐지신고
한다.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등) ①
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	
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	
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u>사용 신고를 하고 이</u>	<u>사용신고를 하여야</u>
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u>&lt;신 설&gt;</u>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으면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이륜자동차대장에 필요한 사항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 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 설>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저의무) ①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 조제1항에 따른 <u>사용 신고</u>를 받 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 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 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을 기재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
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u>③</u>
사항이 변경
<u>된</u>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
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렁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
동차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이륜
자동차 제작정보를 제69조에 따
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
송하여야 한다.
세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의무) ① (현행과 같음)
2
<u>사용신고</u>
사용신고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49조의2(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등) ①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48조에 따라 사용신고된이륜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폐지신고를 하여야한다.

-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2.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 는 수입하는 자에게 반품한 경우
- 3.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이륜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열실된 경우
- 4. 이륜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5. 이륜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 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 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4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 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이 륜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 1항에 따른 사용폐지신고를 하 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 동차 소유자가 직접 사용폐지신 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를 한 자(이륜자동차 소유 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 를 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해당 이륜자동차 수출을 이 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 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 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사용신고 를 할 수 있다.

④ 사용폐지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폐지신고된 이륜자동차 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의 발 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9 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륜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다 건으로 본다.

제49조의3(신고사항의 직권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신 설>

-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하여야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한경우
- 2. 이륜자동차의 차대가 이륜자동차대장상의 차대와 다른 경오
- 3.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26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폐차한경우
- 4.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7조 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 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 당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행하 는 경우
-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이륜자동차대장 에 적힌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륜자동차 신고 사항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와

제4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 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 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지체 없이 그 이륜자동차 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반 납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이륜자동 차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사항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 <u>지</u>,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 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 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6 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 31조의4까지,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 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 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 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 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 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 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 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 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1 /9/ 1:
1. 본인이 소유하는 이륜자동차
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이륜자동차
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u>포</u> 함한
다)
제34조,
제35조
"등록원
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신규사용신고"
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
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u> "자동차안전기준"</u>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 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 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 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 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으로 본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④ (생 략)

- 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u>자</u> <u>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u> 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를 발급할 것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b>.</b>
1
<u>자</u>
동차·자동차등록증(이륜자동
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
용신고필증을 말한다. 이하 제
2호에서 같다)·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
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	
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	
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	14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나.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히
	여 폐차 요청을 받은 이륜
	자동차에 대한 사용폐지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u>나</u> . (생 략)	<u>다</u> . (현행 나목과 같음)

다.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 대번호 등이 <u>자동차등록증</u>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라. 제58조제5항제2호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u>마</u>. (생략) 15. · 16. (생략) ② ~ ⑤ (생략)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제73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등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 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 --

<u>라</u>
자동차등록증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을 말한다. 이하 마목에서
<u> 같다)</u>
<u>마</u> . <u>제58조제5항제2호를</u>
<u>자동차등록증·등록번</u>
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
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
한다)
<u>바</u> . (현행 마목과 같음)
15.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 의 조사·확인이나 그 밖의 필 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 다)을 하게 할 수 있다.

- 1. <u>제35조</u>를 위반하여 자동차에 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 나 조작하는 경우
- 2. · 3.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7의2. (생략)
  - 8. <u>제58조제5항제1호을</u>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 9. 제58조제5항제2호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u>자동</u>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1. 제35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벌칙)
(6.1)
1. ~ 7의2. (현행과 같음)
8. 제58조제5항제1호를
9. <u>제58조제5항제2호를</u>
<u>자동</u>
차등록증(이륜자동차의 경우
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을 말한다)·등록번호판(이륜
· · · -

10. (생략)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 제 1의2. ~ 5의2. (생 략) <u><신 설></u>

6. • 7. (생략)

제84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신 설>

<신 설>

<u>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u> <u>차 번호판을 말한다)</u>
40 (5) 5) 5) 6)
10. (현행과 같음)
제82조(벌칙)
1의2.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제49조의3제3항을 위반하
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륜자동
차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 7.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5. (현행과 같음)
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
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
<u> 자동차를 운행한 자</u>
7.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

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7. (생략)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

 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 한 자

18의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19. ~ 24.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 </u>	
<b>(4)</b>		_

-----.

1. ~ 1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8의3. (현행과 같음)

18의4.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의5.
 제49조의2제3항을 위반

 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18의6.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 하여 사용폐지신고된 이륜자 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에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u>자</u>

19. ~ 24. (현행과 같음)

5 -----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 제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 6. 삭 제 6의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6의2. -----이륜자동차의 변경 <u>사항이나</u> -----사항을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삭 제 7의2. <u>제8조제3항</u> 또는 제58조 7의2. <u>제8조제3항</u>, 제48조제5항 제8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 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8. • 9. (생략) 8. • 9.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⑥ (생략)